

『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비둘기아파트 매각부지에 인근주민들이 이용 중인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임.
- 도로개설 해당부지가 임야로 경사면이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처분재산】

- 위 치 : 형곡동 산109, 산110-3
- 대 상 : 토지 4,353㎡(1,316평)
- 기준가격 : 450,000천원(가감정액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비둘기아파트 매각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 중인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며,
- 도로개설 해당부지가 임야로 경사면이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제출된 안전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형곡동 산109번지, 산110-3번지의 토지 4,353㎡(1,316평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제195회(2015. 4월) 임시회 시 매각 결정된 공무원아파트(형곡동 65번지) 부지 10,917㎡에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, 조속한 도로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 대한 문제 등 본 관리계획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